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숙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이숙자, 박상혁 의원(2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박 석,  
박영한, 박환희, 유만희,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홍국표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고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는 상점가별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지하도상가를 일반입찰(최고가입찰)에 따라 5년마다 대부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권 쇠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권브랜드 조성(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고투몰 등) 등 상인이 주체인 법인에서 그 동안 추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모두 사장될 위기에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고, 상가 활성화에 상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지하도상가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등에 대한 대부기간 갱신을 허용함.

### 2. 주요내용

- 가. 상가 또는 점포의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해당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은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상가에도 적용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계약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은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갱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지하도상가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신 설 >	제6조(계약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u>다만, 해당 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법인은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u>